

의안번호	2200629
의 퇴 인	소병훈 의원
회 답 일	2024.07.11.
추 계 번호	24C105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손자녀돌보미에게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157억원, 2029년 2,00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 223억원(연평균 2,044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손자녀돌보미 보육 비용 지원 (안 제34조의4 신설)	2,157	2,060	2,012	1,992	2,002	10,223	2,044

주: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손자녀돌보미의 범위, 보육 비용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 1) 보육 비용 지원액은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 2)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될 영유아의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0~5세)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의 수에 낮 시간 동안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연초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전체가 손자녀돌보미로 등록된 뒤 해당 인원수가 연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등록 탈락, 미등록, 지원 신설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월별 이용 인원 변화 등 인원수 증감 요인은 고려하지 않음
- 3) 월 지원 단가는 시간제보육의 월 지원 한도(80시간)에 시간당 지원 단가(3,000원)를 곱한 24만원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해당 단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단가 할증 및 삭감 요인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의4 (손자녀돌보미 신고 등)	(제1항)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손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손자녀돌보미에게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손자녀돌보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재량규정
3	안 제54조(벌칙)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4조의4 (손자녀돌보미 신고 등)	○	
2	안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안 제54조(벌칙)	×	- 개정안에 따라 손자녀돌보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자녀돌보미 보육 비용,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은 경우, 보육비용 지원액 등이 환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나 손자녀돌보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위반 인원, 환수금액, 벌금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비용추계가 불가능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비용추계는 손자녀돌보미¹⁾로 등록한 영유아의 조부모에게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²⁾

○ 개정안에 따르면 손자녀돌보미에 대한 보육 비용 지원주체는 “국가”와 “지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29호)제2조제6호 “손자녀돌보미”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조부모로서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안 제34조의2(양육수당)에 따라 손자녀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양육수당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

방자치단체”로 재정소요액 또한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 손자녀돌보미 보육 비용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지 않고 추가재정소요의 총액만을 추계

□ 보육 비용 지원액은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1명의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보육 비용을 추가 지원할 것인지 여부와 추가 지원 규모 등을 적절히 설정하기 어려우며, 활용 가능한 통계(전국보육실태조사) 또한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 단위 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보육 비용 지원액을 추계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의 요건으로 보호자 교육 외에 다른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보육 비용 지원 기준에도 소득 요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손자녀돌보미로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된 인원은 모두 보육 비용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제
-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사업 중 지원 비용을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사업도 있으나, 서비스 신청과 계약, 비용 정산 등 엄격한 이용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 돌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 지원 방식을 손자녀돌보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손자녀돌보미에 대한 보육 비용은 월 단위로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는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될 영유아의 수에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인원수와 지원 단가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전제

-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될 영유아의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0~5세)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의 수에 낮시간 동안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 개정안은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정의에 따른 영유아의 연령기준(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 손자녀의 연령을 0~5세로 가정

- 낮시간 동안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비율은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연령별 조부모 양육 비율을 준용하고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연초에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 전체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손자녀돌보미로 등록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해당 인원수가 연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손자녀돌보미 등록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영유아를 양육함에도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손자녀돌보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 손자녀돌보미 지원 신설에 따른 수요 증가와 월별 이용 인원 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월 지원 단가는 시간제보육의 지원 수준에 준하도록 24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월 지원 단가는 시간제돌봄³⁾을 준용하여 시간제보육의 월 지원 한도(80시간)에 시간당 지원 단가(3,000원⁴⁾)를 곱한 24만원으로 가정
 - *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등에 따른 단가 인상은 고려하지 않음
 - 시간제보육·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일부 이용하면서 손자녀돌보미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이용 시간만큼 손자녀돌보미 지원 단가를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 손자녀돌보미 지원을 받으면서 시간제보육 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영유아의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모든 손자녀돌보미에게 동일한 지원 단가를 적용
 - * 이외에도 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단가 할증 등 각종 단가 인상·인하 요인은 고려하지 않음

□ 국회 심의 기간 및 개정 법률의 공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현행 보육체계는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유치원·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와 양육수당(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원을 금지하되,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라 하더라도 긴급하거나 제한적인 돌봄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시간제 서비스에 한해서만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시간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손자녀돌보미 지원을 받더라도 양육수당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는 중복 지원 허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손자녀돌보미에 대한 지원금액도 현실적으로 시간제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 서비스 중 손자녀돌보미와 가장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는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이나, 이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하여 소득 수준별로 보육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손자녀돌보미의 지원 단가에 준용하기 어려움. 이에 본 추계에서는 보편적 보육 지원 사업인 “시간제보육”의 이용 한도와 단가를 준용하여 손자녀돌보미의 보육 비용 지원액을 추계하는 것으로 전제함

4) 시간제보육의 이용 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며, 이 중 3천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수에 월 지원 단가와 지원 개월수를 곱하여 추계

○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수는 전체 영유아 수에 조부모 양육 비율을 곱하여 추계

- 전체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연령별(0~5세) 장래인구추계를 적용
- 조부모 양육 비율은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라 “연령별 조사 대상 영유아 중 낮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이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인 영유아의 비율”을 적용하고, 각 연령별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⁵⁾

[표 2] 연령별 영유아 수: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0세	217,226	217,079	227,833	237,996	247,279
1세	228,266	216,540	216,413	227,121	237,221
2세	243,395	228,264	216,576	216,460	227,149
3세	258,041	243,386	228,286	216,626	216,522
4세	272,882	257,800	243,177	228,108	216,474
5세	292,438	272,427	257,384	242,792	227,754
계	1,512,248	1,435,496	1,389,669	1,369,103	1,372,39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표 3] 연령별 조부모 양육 비율(2021년 기준)

[단위: %(명)]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력	기관에 맡김	없음	계
0세	2.2	75.5	0.2	2.7	5.6	0.1	0.7	0.5	12.3	0.1	100.0 (780)
1세	0.9	43.4	0.8	1.2	2.7	-	0.6	0.4	50.0	0.0	100.0 (472)
2세	0.9	36.1	-	0.8	3.0	0.5	0.3	0.6	57.8	-	100.0 (427)
3세	0.7	33.9	-	2.0	2.9	-	0.4	0.3	59.7	-	100.0 (486)
4세	0.7	29.8	0.1	1.4	2.8	-	0.8	0.7	63.6	0.1	100.0 (630)
5세	0.4	32.8	0.9	1.5	3.5	-	0.6	0.9	59.3	0.2	100.0 (676)
전체	0.9	41.4	0.3	1.6	3.4	0.1	0.6	0.6	51.0	0.1	100.0 (3,471)

주: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2021.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의 수는 연중 유지되며, 월별 이용 인원 변화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

[표 4]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 수: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0세	18,030	18,018	18,910	19,754	20,524
1세	8,902	8,445	8,440	8,858	9,252
2세	9,249	8,674	8,230	8,225	8,632
3세	12,644	11,926	11,186	10,615	10,610
4세	11,461	10,828	10,213	9,581	9,092
5세	14,622	13,621	12,869	12,140	11,388
계	74,908	71,512	69,848	69,172	69,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 지원 단가는 24만원으로 하며, 해당 단가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원 개월수는 12개월로 함
 - 지원 단가는 시간제보육 월 지원 한도(80시간)에 시간당 지원 단가(3,000원)를 곱한 금액
 - 연초에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모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되며, 연중 지원 여부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손자녀돌보미에게 양육되는 영유아수에 월 지원 단가와 지원 개월수를 곱하면 손자녀돌보미에 대한 보육 비용 지원액은 2025년 2,157억원, 2029년 2,002억원 등 5년간(2025~2029년) 총 1조 223억원(연평균 2,044억원)으로 추계

[표 5] 손자녀돌보미 보육 비용 지원액: 2025~2029년

(단위: 명, 만원, 개월,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양육 영유아 수	0세	217,226	217,079	227,833	237,996	247,279	1,147,413
	1세	228,266	216,540	216,413	227,121	237,221	1,125,561
	2세	243,395	228,264	216,576	216,460	227,149	1,131,844
	3세	258,041	243,386	228,286	216,626	216,522	1,162,861
	4세	272,882	257,800	243,177	228,108	216,474	1,218,441
	5세	292,438	272,427	257,384	242,792	227,754	1,292,795
	계(A)	1,512,248	1,435,496	1,389,669	1,369,103	1,372,399	7,078,915
월 지원단가(B)		24	24	24	24	24	24
지원 개월수(C)		12	12	12	12	12	12
손자녀돌보미 보육 비용 지원액(A×B×C)		2,157	2,060	2,012	1,992	2,002	10,2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손자녀돌보미 지원제도 설계 및 실제 영유아수 등에 따라 추계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